

제305회 임시회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유 용 의원 발의)

제 안 설 명 서



2022. 1

서울특별시의회 유 용 의원
(더불어민주당, 문화체육관광위원회)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유 용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 필요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므로, 조합정관이 정하는 경우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분양이 가능하게 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
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